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의안 번호	562
----------	-----

제출년월일 : 2000. 5./0.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정이유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운영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2장)

☐ 기 능 (안 제4조)

- 문화예술진흥 정책수립 및 시행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 시 문화유산의 지정·폐지 및 보호관리
- 파주시사 편찬

☐ 위원수 : 15인 이내 (안 제5조)

☐ 전문위원활용 (안 제9조)

- 인 원 : 2명 이내의 전문위원과 1명의 보조사무직원
- 활용계획 : 시사편찬 및 향토문화유산의 연구 조사 등

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안 제3장)

☐ 목 표 액 : 30억원 (안 제15조)

☐ 기금의 재원 : 시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간행물 판매대금, 기타 수익금

☐ 기금의 용도 (안 제16조)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활동
- 전통문화예술 및 향토자료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 문화재 및 향토유적의 보존에 관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필요한 소요경비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진흥계획수립) ①시장은 파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
2. 향토자료조사·발굴사업
3. 시민문화예술활동 권장 및 보호·육성사업
4. 문화예술공간 확충 및 보완·정비사업
5.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제2장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심의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사항
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문화유산의 지정·폐지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 파주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2. 총무국장

3. 파주문화원장, 예충파주지부장

4.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5.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 제1호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4호 내지 5호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전문위원) ①문화예술진흥정책의 수립·시행과 향토자료조사 및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인이내의 전문위원과 1인의 보조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및여비) ①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시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장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제13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간행물 등의 판매대금
4. 기타 수익금

제15조(기금의 조성) ①제14조 규정에 의한 기금 총액은 30억원으로 한다.

②제14조 제1호의 규정중 파주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한다.

③필요한 경우 파주시 또는 파주시의 지원을 받아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하여 이를 유상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및 향토자료의 발굴·전승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문화제 및 향토유적의 보존에 관한 사업
 5.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②기금은 설치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운용기금중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계리) 기금의 계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제19조(기금운용심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총무국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파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소 관 실.과.소		문화체육과 ☎940-4064
입 안 자	문화체육과장	박 재 홍
	문화예술담당	조 욱 래
	담 당 자	권 영 석